

학생 공가처리에 관한 내규

제정 2006. 11. 20

변경 2017. 3. 21

제1조(목적)

이 내규는 재학생들이 개학 중에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식 휴강을 제외한 공가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 정의)

공가라 함은 개학 중에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.(변경 2017.3.21)

제3조(기본방침)

공가는 수업의 결손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가대상)

공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생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였을 경우
2.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훈련에 참가할 경우
3. 삭제 (2017.3.21)
4. 삭제 (2017.3.21)
5. 소속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(변경 2017.3.21)
6. 교생실습으로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(신설 2016.5.31)
7.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에 감염된 경우(신설 2017.3.21)

제5조(처리절차 및 공가허가서 발급)

- ① 제4조에 의한 공가는 별지의 공가허가서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학부(과)장을 경유, 단과대학장이 승인하고 공가허가서를 발급한다. (변경 2017.3.21)
- ② (변경 2009.2.10, 삭제 2017.3.21)

제6조(공가허가서 발급)

- ① 삭제 (2017.3.21)
- ② (변경 2009.2.10, 삭제 2017.3.21)

부 칙

이 내규는 200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변경 내규는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변경 내규는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변경 내규는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수업관리지침

제8조(출석인정)

- ① 7차학기이상 조기취업을 인정할 경우 :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또는 조기취업자 수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.
- ② 공결허가서를 제출할 경우 : 학생이 재학 기간 중 아래와 같이 공결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필요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공결인정기간에 해당하는 공결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공결사유	공결인정기간	필요증빙서류
본인의 결혼	• 5일이내(휴일포함)	• 혼인관계증명서
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 사망	• 5일이내(휴일포함)	• 가족관계 증빙서류 • 사망진단서
형제자매의 사망	• 3일이내(휴일포함)	
부모의 형제자매 사망	• 1일	
학생의 입원, 등교가 불가능한 전염성 질병 감염	• 3주이내 입원 및 격리 치료 기간(휴일포함)	• 입·퇴원확인서 •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(병명기재)
본인의 출산	• 3주이내 입원 및 치료기간(휴일포함)	• 출산 증명서류
배우자의 출산	• 5일이내(휴일포함)	• 출산 증명서류 • 가족관계 증빙서류
징병검사, 예비군훈련 등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	• 실제 소요기간	• 참가확인서 또는 총장결재를 득한 관련 서류
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	• 해당기간	
국내외 전국규모이상의 각종 대회(학술대회 또는 체 육대회) 및 교류행사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	• 해당기간	
체육특기자가 대회출전 및 훈련참가 하는 경우 (훈련은 국가대표로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한함)	• 해당기간, • 수업일수대비 최대 1/2 까지만 수업대체 허용	
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경우	• 월1회, 학기당 4일이내	•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(병명 기재)
•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• 채용확정 후 직무관련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- 위 2개 항목의 경우 7차 학기 이상(건축학과는 9차 학기 이상) 재학생에 한함.	• 실제 소요기간 • 4주이내	• 참가확인서
군입대휴학자 중 수업일수 3/4선 초과 이후 입대일부터 종강일까지 수업출석	• 해당기간	• 입영통지서

코로나19 관련 공결인정기간 및 필요증빙서류

공결인정기간	공결대상자	필요증빙서류
3주이내 (휴일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확진환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원치료통지서/입원확인서
15일이내 (휴일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접촉자/해외입국자 • 자가격리대상자(코로나19 의심자) • 자율보호대상자(37.5℃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, 검사자와 접촉한 자, 코로나 19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가격리통지서 • 선별검사 결과지 또는 소견서 • 진료확인서(병명 기재) • 교내 학생보건실 코로나19 관련 확인서

- ③ 공결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공결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(휴일 포함)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의 승인을 거쳐 공결허가서를 받은 후 반드시 담당과목 교원에게 제출하여 공결을 신청해야 한다.
- ④ 공결허가서(학생공가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)를 제출받은 강의담당 담당교원은 재량에 의하여 해당 학생에게 실제 강의와 유사한 수준의 온라인 교육(동영상, e-mail 등) 또는 레포트 및 과제물 등의 부과·채점 등을 통하여 출석을 대체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.